

인사위원회 운영내규

인사위원회 운영내규

제정 2013. . 내규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재단법인 청송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사규정 제91조에 의거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인으로 위촉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이 되며, 위원은 재단의 인사업무 소관 부장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 중 1인
2. 재단 이사 중 1인
3.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1인
4. 당연직 위원으로 군의 소관부서장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3. 직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연봉의 재심청구 심의
5. 기타 인사에 관한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요구사항 심의

제5조(소집과 의결) ① 위원장은 다음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2. 이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비공개와 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고 회의 내용과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의결내용의 보고)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부의사항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 참석할 수 없다.

부 칙

이 내규는 201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